

직원모집

함께 일할 새가족을 찾습니다.

(주)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

- 건축C.G분야 0명
- 경력 7년이상 팀장급직원 특채
- 1차 - 자필이력서
2차 - 면접 및 포트폴리오 심사
- Fax 및 우편접수 가능
-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6-3
- 문의: Tel 0331-39-8120,
Fax 0331-39-8121

SHOP DRAWINGS이란?

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도면과 시공도면의 구분에 있어 「Shop Drawings」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,

- 「Shop Drawings」이란 공사 수급자, 하도급업자, 제조업자, 공급업자 등이 관련 공사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, 도표, 계획공정, Data 등을 말한다.
 - 공사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따라 도급업자들이 일을 수행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Shop Drawings을 신속하게 검토, 승인한 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공사수급자는 Shop Drawings을 승인하고 제출할 때에 모든 재료에 대하여 확인하고 결정하며 현장치수 확인,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 판단 및 계약서에 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한다.
 - 계약서에 맞지않게 설계자가 Shop Drawings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설계자에게 특기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알려주었더라도 그에대해 설계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공사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. 설혹 설계자가 잘못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시공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. (이상 미국 기준)
- 건설교통부가 「Shop Drawings」을 시공도면으로 정의한 것이라든지, 시공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포괄적으로 Shop Drawings으로 사용케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. <자료제공: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위원회>

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

(근거규정: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제2항)

보수교육위탁기관 신규 지정('98. 6. 19)에 따른 교육훈련(직무훈련) 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건축사 교육훈련

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·비등록 건축사는 건기법에 의한 직무교육(교육훈련)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기법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에 등록을 한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원인 건축사(대표자) 및 직원(건축사)의 교육기간은 기술사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건축사는 교육기간을 2일로 함(14시간 이상) 건축사인 감리원은 그 교육기간을 기술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게 된다.
- 건교부는 규칙 제3조제1항제2호를 조속 개정할 예정이며 동 규정 개정전이라도 건축사는 교육기간을 2일로 운영 함.
※ 단, 최초 교육훈련시 교육기간은 2주임(기술사와 동일)

2.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보수교육과의 관계
가)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은 기존에 보수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3개 교육기관(건설기술교육원,

농어촌진흥공사, 시설안전기술공단)에서 신규 교육기관 22개소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각 과정 종목별로 지정('98. 6. 19일자 관보 참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)
나)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의무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같음하여 절차가 간소화 됨 (기술자격의 각 종목은 희망 교육기관에 문의바람)
다) 본 협회의 건축교육원(전문교육기관; 1주교육)도 또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(98. 6.19) 있으나, 협회시정상 98년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유보하고, 99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코자 건설교통부에 유보신청을 한 바 있음.

3. 최초교육자 교육기산일

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날
- 기술계기술자: 취업일자로부터

- 학·경력자: 협회·신고접수 처리일 (처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신고를 한 상태에서 96년도에 건축사협회에 기술자 이관신고를 하였을지라도, 관리주체만 바뀐 것으로 보기에 처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시점을 최초 협회신고시점으로 본다.
- 특급기술자(감리원) 인정시점
교육기관이 단축되는 대상인 "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" (규칙 제3조제1항제3호) 규정에서 인정시점은
- 특급으로 신고·접수처리된 날 또는 기타 등급으로 신고한 후 소정기간의 경력을 추가하여 특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말함 (이 시점부터 10년 경력 추가시 교육기간 2일로 단축)

*문의: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교육원
(Tel: 02-581-5711~4)

9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

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8년 6월 25일
건설교통부장관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구 분	건 축 사 자 격 시 험	건 축 사 자 격 특 별 전 형 시 험
1. 응시자격	가. 건축사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. 건축사법 부칙 제3조 (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- 법 제4918호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	가. 건축사법 부칙 제2조 (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- 법 제3242호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.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(대통령령 제9878호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2. 시험일자, 시험장소, 시험시간	가. 시험일자: '98. 9. 6 나. 시험장소: '98. 8. 25 각 시·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다. 시험시간: '98. 8. 25 각 시·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	가. 건축사자격시험과 동시 시행
3. 시험과목, 시험방법	가. 건축법규-객관식 선택형 나. 건축설계-실기 (건축설계 과제명은 당일 제시)	가. 건축구조, 건축계획-객관식 선택형
4.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부	가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: '98. 7. 13 ~ 7. 18 (단, 토요일은 13:00까지, 공휴일은 제외) 나. 응시원서 교부 및 접 수 처: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·도건축사회 ○ 서울건축사회: (02) 581-5715~8 ○ 대구건축사회: (053) 753-8980~5 ○ 광주건축사회: (062) 521-0025~6 ○ 울산건축사회: (052) 266-5651 ○ 강원건축사회: (0361) 54-2442 ○ 충남건축사회: (042) 256-4088 ○ 전남건축사회: (062) 365-9944 ○ 경남건축사회: (0551) 46-4530~3	○ 부산건축사회: (051) 633-6677 ○ 인천건축사회: (032) 437-3381~4 ○ 대전건축사회: (042) 485-2813~7 ○ 경기건축사회: (0331) 47-6129~31 ○ 충북건축사회: (0431) 223-3084~6 ○ 전북건축사회: (0652) 251-6040~7 ○ 경북건축사회: (053) 744-7800~2 ○ 제주건축사회: (064) 52-3248
5. 제출서류	가. 출원시 제출서류 ○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(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): 1 부 ○ 컬러사진 (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(3cm×4cm)): 2 매 (응시원서 부착 제출) ○ 응시수수료: 48,000원 (응시원서대 2,000원 별도) 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① 응시표사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호적초본 1부 ④ 해당 증명서 사본 1부(건축분야 기술사·기사1급 자격증·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·외국건축사면허증·2급건축사면허증 ⑤ 학력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컬러사진 2 매 ⑧ 우편봉투 1 매 ※ 합격예정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.	
6. 응시자 지참물	가. 공 통: 응시표,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, 컴퓨터용수성사인펜 나. 실기시험: 600mm×900mm 규격 제도판 (경사각도 조절장치 부착된 제도판 사용 가능), T형자 또는 제도판 부착 평행자, 흑색연필, 삼각자, 스케일자, 소형전자계산기, 지우개, 기타 제도용품 (단, 기계식 제도기는 사용 불가) ※ 중·고등학교 책상(가로60cm×세로40cm, 2개)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실기시험을 실시함.	
7. 합격예정자 발표	가. 합격예정자 발표: '98. 10. 9 각 시·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: '98. 10. 19 ~ 10. 22 (단, 토요일은 13:00까지)	
8. 준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('98. 9. 5)까지로 하며,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. ○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단,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,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.) 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,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○ 건축설계용지(깔판용지 포함)는 본 협회에서 배부하며 책상, 제도대, 깔판용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 ○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및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, 일반계산용이 아닌 다기능화된 전자수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○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 ○ 응시원서상의 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답안지는 열람·확인할 수 없습니다. ○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 ○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,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○ 시험당일 시험장내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 ○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실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실 (02) 581-5711~4, 건설교통부 건축과 (02) 504-9139</p>	